

##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460
----------	------

제출년월일 : 2010년 11월 일  
제출자 : 제천시장

### 1. 제안이유

엑스포 실행기구의 해체와 민선5대 핵심전략 사업인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 및 기업유치, 시민복지 증진, 여성권익 신장 등 전략사업 집중을 위한 직제로 재편하고자 조직의 비효율적인 유사·중복 기능의 통·폐합과 기능의 이관으로 '꼭 필요 한 기능'을 확대하여 '일 더 잘하는' 조직으로 리모델링 하고자 함

### 2. 주요개정안

#### [기구개편안]

구 분	개 편 전	개 편 안	증 감	비고
본 청	2본부, 1실, 1담당관, 17과	2국, 2담당관, 18과	증1과	
직속기관	2기관 4과	2기관 4과	-	
사업 소	4사업소	3사업소	△1사업소	
읍 면 동	1읍, 7면, 9동	1읍, 7면, 9동	-	
의 회	1국 2담당	1국 2팀	팀명변경	

#### [주요조례안]

- 사무분장을 위한 국의설치, 국의건제순 ( 안 제4조 관련)
- 국별 소관 기구명칭 및 개략사무 분장 ( 안 제4조, 제5조 관련)
- 행정복지국의 직제명 및 국에 두는과와 개략사무 ( 안 제5조 관련)
- 경제건설국의 직제명 및 국에 두는과와 개략사무( 안 제6조 관련)
- 사업소설치, 소관 개략 사무 ( 안 제13조 내지 제15조 관련)

#### ※ 개정요약

- 국의설치 : 행정복지국, 경제건설국 (국의명칭, 국간 직제순 변경)

- 기구신설 : 정책담당관, 여성정책과, 한방바이오과
- 기구폐지 : 투자유치담당관, 엑스포지원단, 관광시설관리소

### [건제순 및 기구명칭]

- 국간의 기구(부서)이동 : 문화관광과 ↔ 환경과
- 부시장 직속 보좌기구 설치 : 기획감사담당관, 정책담당관
- 행정복지국 직제순 조정 : 자치행정과 → 홍보전산과 → 사회복지과 → 여성정책과 → 문화관광과 → 평생학습체육과 → 회계과 → 세정과 → 민원지적과
- 경제건설국 직제순 조정 : 경제과 → 한방바이오과 → 농업축산과 → 환경과 → 지역개발과 → 건설방재과 → 건축디자인과 → 교통과 → 산림공원과

### 3. 의안전문 : 불임

### 4. 기타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불임
- 나. 입법예고기간 : 2010. 10. 11 ~ 10. 31(20일간)
- 다.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 : 수정의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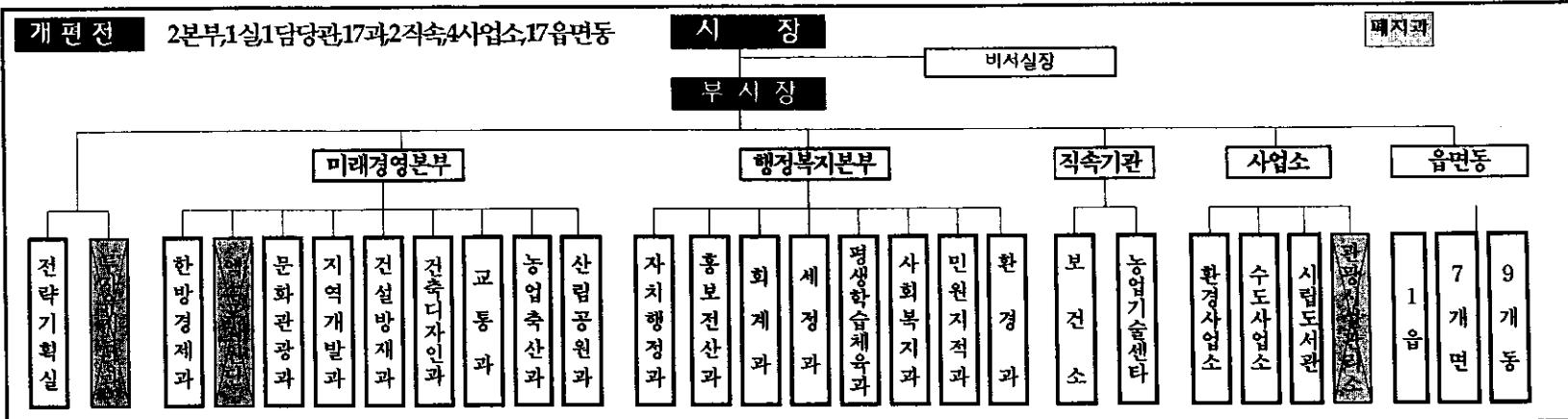
입 법 예 고 안	수정의결안	비 고
부시장직속	미래창조기획단	정책담당관
경제건설국	한방경제과	경 제 과
경제건설국	투자지원과	한방바이오과

라. 기타 :

### 5. 관계법령: 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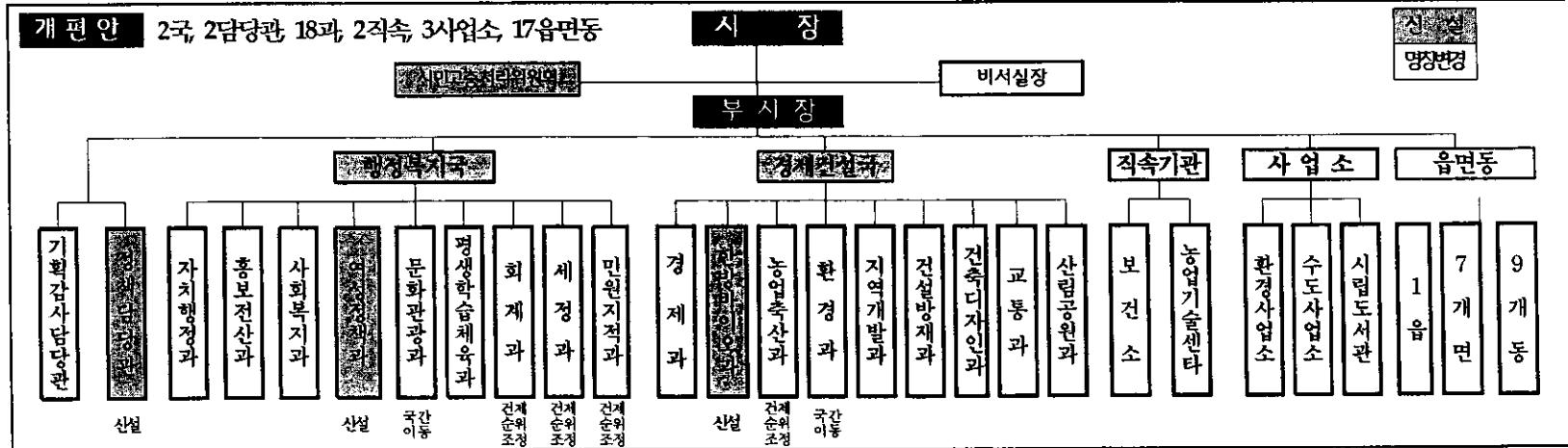
- 첨부 1. 의안전문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련법령 1부  
 4.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 사본 1부

## 제천시 조직개편안 전·후 기구표



- 1 -

개 편 앙 2국, 2담당관, 18과, 2직속, 3사업소, 17읍면동



##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 제112조 내지 제114조, 제117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규정에 따라 제천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과장의 직급 등) ① 제천시(이하“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 및 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소장, 과장 등 보조, 보좌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 및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장 시 본청

제3조(보좌기관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시장 직속기구로 기획감사담당관과 정책담당관을 둔다.

제4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과 경제건설국을 둔다

제5조(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① 행정복지국에 자치행정과, 홍보전산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문화관광과, 평생학습체육과, 회계과, 세정과, 민원지적과를 둔다.

② 행정복지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복무, 포상, 보안, 공인, 기록물 관리
2.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3. 자매결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외국인 지원 사무
4. 지방행정 조직관리 및 공무원 인사, 교육, 근무성적평정
5.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및 공무원 단체 관리
6. 민방위, 병력·인력동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7. 시정홍보, 소식지 발간
8. 행정 전산화 및 통신사무
9. 각종 통계조사에 관한 사무
10.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11.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
12. 심신장애인의 보호와 복지증진
13.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관한 업무
14. 자원봉사단체,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 사무
15. 여성정책 및 기획, 영유아 보육 및 다문화가정 지원
16. 여성·아동·청소년·노인의 복지증진
17.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장례지원
18. 문화재 지정·보존 관리, 문화·예술 단체지원
19. 관광시책 개발 및 홍보 관광자원·관광지 및 온천개발
20. 축제기획, 국제음악영화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21. 청풍문화재단지, 촬영장, 수상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22. 수상레저사업, 관광선 및 수상항공시설 관리운영
23. 평생학습, 인재육성재단 육성 및 운영
24. 생활체육지원, 도민체전, 문화·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 25. 지출, 계약, 물품 및 국·공유 재산관리
- 26. 청사 환경정비 및 에너지 관리 종합대책
- 27. 지방세·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
- 28.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인감, 여권 등 민원 업무
- 29. 지적관리, 공시지가, 새주소 사업, 부동산관리, GIS 사업

제6조(경제건설국에 두는 과) ① 경제건설국에 경제과, 한방바이오과, 농업축산과, 환경과, 지역개발과, 건설방재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산림공원과를 둔다.

② 경제건설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경제통상, 균형발전, 산·학·관 협력, 삶의질 향상에 관한 사무
- 2. 지역경제 활성화, 유통단지, 전통시장 개선 및 활성화 사업
- 3. 일자리창출 취업교육, 공공근로사업, 사회적 기업육성
- 4. 산업단지 등 지역내 기업 및 투자유치 사업 추진
- 5. 기업지원에 관한 사무, 노사관리
- 6.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활성화 사업
- 7. 한방엑스포공원 및 시설관리·지원
- 8. 한방산업 및 인프라 육성·관리
- 9. 2014 한방바이오엑스포 개최, 한방바이오박람회 추진
- 10. 한방 약초의 생산, 가공, 유통산업 지원
- 11. 농정업무 및 친환경 농업 등 영농지원
- 12.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 13. 환경보전, 환경보호, 유해조수, 수질 오염총량관리
- 14. 청소·오물수거 처리, 공중화장실 신축 및 관리
- 15. 자원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주민협의체 운영
- 16. 지역계획 사무, 지역개발사업, 마을개발업무
- 17. 도로 및 하천의 유지 관리·보수
- 18.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로점용허가, 전문건설업

19. 재난예방 사업 및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20. 건축행정 및 인·허가, 공공디자인, 광고물
21.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중화 사업, 문화의 거리 관리
22. 교통행정, 교통지도, 교통편의 시설설치·관리, 차량등록 관리
23.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유가보조금, 대중교통 대책추진
24. 산림보호 및 관리, 도시공원·녹지, 휴양림관리
25. 한방생태숲조성 및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 제3장 직속기관

#### 제1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제7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주민의 보건의료 편의 도모를 위해 시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제8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원은 관할 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소관 사무를 수행 한다.

##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제천시 봉양읍 미당리 211-1번지(옹당이길 22)에 둔다.

제11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12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리한다.

1.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계획 및 평가
2. 농업인 교육 및 전문인력육성
3. 실증포장의 체험학습장 운영
4. 생활개선사업 및 여성능력개발
5. 농업인 애로기술개발 및 농기계 업무
6. 과학영농시설 운영 정밀농업 지도
7. 소득작목 주산단지 기술보급사업
8. 생산비절감 및 유통개선을 위한 농업경영지도
9. 지역특산물 품평대회 및 홍보
10. 친환경 안전 농·축산물 생산 기술보급
11. 농산물가공 및 브랜드 상품개발

## 제4장 사업소

제13조(설치) ①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2와 같다.

제14조(소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사업소

- 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
- 나. 하수도 정비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 다. 분뇨, 하수, 오수 처리 및 시설물 설치 관리
- 라. 방류수의 수질관리
- 마. 기타 분뇨 및 하수종말처리에 관한 사항

2. 수도사업소

- 가. 상수도 행정의 종합계획
- 나. 사업소내 시설물 등 재산관리
- 다.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
- 라. 상수도시설 보전 확충
- 마. 상수도 정비계획 수립추진
- 바. 누수탐사 수선 및 장비관리
- 사. 도수, 취수, 정수, 송배수, 급수시설의 유지관리
- 아. 소독처리 점검 및 수질관리
- 자.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차. 기타 사업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시립도서관

- 가. 도서자료 수집 및 정리

- 나.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 다.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
- 라. 기타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5장 읍·면·동

- 제16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제4항 및 제4조의2제1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동의 사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직무) 읍·면·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8조(읍·면·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면·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미래경영본부장, 행정복지본부장”을 “행정복지국장, 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전략기획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② 제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복지본부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본부장”을 “국장”으로, “전략기획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실·과장, 담당관”을 “담당관, 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전략기획팀장”을 “기획팀장”으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야별	위원회명	근거규정
<u>기획감사</u>	1. 기획예산위원회	• 제천시기획업무규칙 제7조
<u>정책담당</u>	1. 제안심사위원회	• 제천시지방공무원제안규칙 제10조
<u>경제</u>	1.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 제천시지방공무원직무 발명보상 조례 제23조
<u>회계</u>	1.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u>여성정책</u>	1. 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위원회	•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 관리 운용조례 제4조
<u>사회복지</u>	1. 영세민생활안정기금 관리심사 위원회	•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 기금용자 조례 제7조
<u>문화관광</u>	1. 제천시상표권심사 위원회	• 제천시캐릭터상표권사용에 관한 조례 제10조

③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전략기획실”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④ 제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실·과장”을 “담당관, 과장, 소장”으로 한다.

⑤ 제천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미래경영본부장, 행정복지본부장, 전략기획실장, 한방 경제과장”을 “행정복지국장, 경제건설국장, 기획감사담당관, 경제과장”으로 한다.

⑥ 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투자유치담당관”을 “평생학습체육과장”으로 한다.

⑦ 제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미래경영본부장”을 “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⑧ 제천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한방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

⑨ 제천시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본부장·실·과장 및 담당관”을 “국장·담당관 및 과장”으로 한다.

⑩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14조제2항 중 “한방경제과장”을 각각 “경제과장”으로 한다.

⑪ 제천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3항 중 “한방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

⑫ 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미래경영본부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⑬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0조제3항 중 “축제영상팀장”을 “영상산업팀장”으로 한다.

⑭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3항 중 “본부장”을 “국장”으로 한다.

⑮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8조제2항 중 “미래경영본부장”을 “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⑯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제10조제3항, 중 “미래경영본부장”을 각각 “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⑰ 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본부장”을 “국장”으로 한다.

⑱ 제천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미래경영본부장”을 “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본부장”을 “국장이”으로 한다.

⑲ 제천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⑳ 제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본부장급”을 “국장급”으로 한다.

㉑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미래경영본부장”을 “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㉒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중 “미래경영본부장”을 각각 “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㉓ 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본부장”을 “국장”으로 한다.

㉔ 제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제2항 중 “미래경영본부장”을 “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㉕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본부장·실·과장”을 “국장·담당관·과장”으로 한다.

㉖ 제천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실·과장 및 담당관”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별표 2 중 “실과, 사업소”를 “부서”로 한다.

㉗ 제천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행정복지본부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경영본부장”을 “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실·과장 및 담당관”을 “담당관 및 과장”으로 한다.

㉘ 제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본부 및 실·과 및 담당관”을 “국, 담당관, 과”로 한다.

㉙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서식 중 “실과명”을 “부서명”으로, “사회복지과”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로 한다.

별표 2의 서식 중 “실과명”을 “부서명”으로 한다.

㉚ 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미래경영본부장, 행정복지본부장”을 “행정복지국장, 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㉛ 제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실·과 및 담당관”을 “담당관·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실·과장 및 담당관”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③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실·과장 및 담당관”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③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미래경영본부장, 행정복지본부장”을 “행정복지국장, 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④ 제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주민지원팀장”을 “복지기획팀장”으로 한다.

⑤ 제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시민복지팀장”을 “복지기획팀장”으로 한다.

⑥ 제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여성정책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여성유소년팀장”을 “아동청소년팀장”으로 한다.

⑦ 제천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기금관리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여성정책과장”으로, “여성유소년팀장”을 “아동청소년팀장”으로 한다.

⑧ 제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본부장, 전략기획실장”을 “국장,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여성정책과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여성정책과장”으로, “여성유소년팀장”을 “여성정책팀장”으로 한다.

③ 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복지본부장, 사회복지과장”을 “행정복지국장, 여성정책과장”으로 하고,

제11조제2항 중 “행정복지본부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사회복지과장”을 “여성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제천시 장애인 극복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중 “재활복지팀장”을 “장애인복지팀장”으로 한다.

⑤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재활복지팀장”을 “장애인복지팀장”으로 한다.

⑥ 제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의약위생팀장”을 “위생관리팀장”으로 한다.

⑦ 제천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지도인력팀장”를 “지도행정팀장”으로 한다.

⑧ 제천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본부장”을 “국장”으로 한다.

⑨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관광시설관리소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제5조 중 “관광시설관리소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별표 1]

##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7조 관련)

기 구 명 칭	위 치	세주소	관 할 구 역
제천시 보건소	제천시 청전동 110	의림대로242	제천시 일원
봉양읍 보건지소	봉양읍 주포리 210-11	주포로8길 8-1	봉양읍 일원
금성면 보건지소	금성면 구룡리 272-16	청풍호로1002	금성면 일원
청풍면 보건지소	청풍면 물태리 133-99	청풍호로56길23	청풍면 일원
수산면 보건지소	수산면 수산리 610-8	월악로22길102-26	수산면 일원
덕산면 보건지소	덕산면 도전리 364-7	약초로82	덕산면 일원
한수면 보건지소	한수면 송계리 282-49	미륵송계로8길23	한수면 일원
백운면 보건지소	백운면 평동리 209-2	애련로13	백운면 일원
송학면 보건지소	송학면 사곡리 1146-1	시포전로2길3	송학면 일원
옥전지구보건진료소	봉양읍 옥전리 138-3	옥전길 34	옥전, 학산, 구학1.2
공전지구보건진료소	봉양읍 공전리 630-2	의암로4길 18	공전1.23, 원박
마곡지구보건진료소	봉양읍 마곡리 570-2	국사봉로7길15	구곡1.23, 삼거리, 마곡
양화지구보건진료소	금성면 양화리 341-4	청풍호로27길9	동막, 대장, 월림2, 양화
장선지구보건진료소	청풍면 장선리 59-2	인등로1497	장선, 후산, 부산, 황석
대전지구보건진료소	수산면 대전리 173-2	인삼로 531	대전, 수곡2, 수리
도전지구보건진료소	수산면 도전리 197-1	오티로 267	도전, 구곡, 서곡, 자곡, 울지
월악지구보건진료소	덕산면 월악리 575-2	월악산로4길31	월악, 수신2, 억수, 광천, 금곡, 삼전
도기지구보건진료소	덕산면 도기리 479-1	도기길 49	도기, 선고1
화당지구보건진료소	백운면 화당리 61-1	화당로2길 15	화당1.2, 운학1.2, 덕동
송한지구보건진료소	송학면 송한리 452	오미로2길 6	송한1.2, 오미, 포전

[별표 2]

##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3조 관련)

사업소명	위치	새주소
환경사업소	제천시 천남동 50번지	청풍호로4길 64
수도사업소	제천시 고암동 124-4번지	탑안로 490
시립도서관	제천시 장락동 672-8번지	내체로 318

## 신·구조문 대비표

### 1.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p>제3조(구성) ① ~ ②(생략)          ③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미래경영본부장, 행정복지본부장이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 의원2명, 전문가 그리고 각종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생략)</p> <p>제7조(간사) ①(생략)          ②간사는 <u>전략기획실장</u>이 된다.</p>	<p>제3조(구성)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행정복지국장, 경제건설국장-----          -----          -----          ④(현행과 같음)</p> <p>제7조(간사) ①(현행과 같음)          ②간사는 <u>기획감사담당관</u>이 된다.</p>

### 2. 제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현행	개정안
<p>제2조(구성) ①(생략)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복지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3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관련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당연직위원은 각 본부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u>전략기획실장</u>, <u>한방경제과장</u>, 자치행정과장, 홍보전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⑤(생략)</p> <p>제5조(제안설명 및 의견청취) ①안건을 제출하는 실·과장, 담당관 및 소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사유, 개요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생략)</p> <p>제6조(간사) ①(생략)          ②간사는 <u>전략기획팀장</u>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생략)</p>	<p>제2조(구성) ①(현행과 같음)          ②-----          -----          -----          -----          ③-----          -----          -----          -----          ④~ ⑥(현행과 같음)</p> <p>제5조(제안설명 및 의견청취) ①-----          담당관, 과장-----          -----          -----          ②(현행과 같음)</p> <p>제6조(간사) ①(현행과 같음)          ②-----          -----          -----          ③(현행과 같음)</p>

### 3.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2조(운영) ① ~ ②(생략)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u>전략기획실 예산팀장</u>으로 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p>	<p>제12조(운영)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          -----          -----          -----          -----</p>

#### 4. 제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별지 1호서식】</p> <p>제천시공고 제 호 제천시 ○○○○ 제정(개정·폐지)안 입법예고</p> <p>제천시 ○○○○를 제정(개정·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제 천 시 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치법규명 :</li> <li>2. 제정(개정·폐지)이유</li> <li>3. 주요골자           <p>* 필요할 경우 조례·규칙(안)</p> </li> <li>4. 의견제출           <p>이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천시장(참조: ○○실·파·단장 및 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연락번호 ○○○-○○○○, FAX- ○○○)</p> <p>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p> <p>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성 명), 주소, 전화번호</p> <p>다. 기타 참고사항 등</p> </li> </ol>	<p>【별지 1호서식】</p> <p>제천시공고 제 호 제천시 ○○○○ 제정(개정·폐지)안 입법예고</p> <p>제천시 ○○○○를 제정(개정·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제 천 시 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치법규명 :</li> <li>2. 제정(개정·폐지)이유</li> <li>3. 주요골자           <p>* 필요할 경우 조례·규칙(안)</p> </li> <li>4. 의견제출           <p>이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천시장(참조: ○○ 담당관·과장 및 소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연락번호 ○○○-○○○○, FAX- ○○○)</p> <p>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p> <p>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성 명), 주소, 전화번호</p> <p>다. 기타 참고사항 등</p> </li> </ol>

#### 5. 제천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략)</p> <p>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경영본부장, 행정복지본부장, 전략기획실장, 한방경제과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1. ~ 7. (생략)</p> <p>④ ~ ⑤ (생략)</p>	<p>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행정복지국장, 경제건설국장 기획감사담당관, 경제과장-----</p> <p>-----</p> <p>1. ~ 7. (현행과 같음)</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 6. 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4조(위원회 구성) ① (생략)</p> <p>②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주관부서 투자유지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10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1. ~ 4. (생략)</p> <p>③ (생략)</p>	<p>제14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평생학습체육과장-----</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 7. 제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9조(실무위원회) ① ~ ②(생략)          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미래경영본부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생략)</p>	<p>제14조(위원회 구성)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u>경제건설국장</u>          -----          -----          ④(현행과 같음)</p>

## 8. 제천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0조(간사) ①(생략)          ②간사는 <u>한방경제과장</u>이 된다.</p>	<p>제10조(간사) ①(현행과 같음)          ②----- <u>경제과장</u>이 된다.</p>

## 9. 제천시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1조(구성) ① ~ ②(생략)          ③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본부장·          실·과장 및 당당관중에서 6인 이내의 위원을 임명하고, 산업단지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4인이내의 위원을 위촉한다</p>	<p>제11조(구성)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u>국장</u>          ----- <u>담당관 및 과장</u>          -----</p>

## 10.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현행	개정안
<p>제6조(위원장 등) ① ~ ②(생략)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u>한방경제과장</u>이 된다.</p>	<p>제6조(위원장 등)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u>경제과장</u>          -----</p>
<p>제1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생략)          ②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u>한방경제과장</u>이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자로 한다.</p>	<p>제1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현행과 같음)          ②----- <u>경제</u>          ----- <u>과장</u> -----</p>

## 11. 제천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생략)          ③당연직 위원은 <u>한방경제과장</u>, 사회복지과장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 ⑥(생략)</p>	<p>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u>경제과장</u>          -----          ④ ~ ⑥(현행과 같음)</p>

## 12. 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6조(회계공무원) (생략)          1. 기금운용관 : <u>미래경영본부장</u>          2. ~ 3. (생략)</p>	<p>제16조(회계공무원) (현행과 같음)          1. 기금운용관 : <u>행정복지국장</u>          2. ~ 3. (현행과 같음)</p>

### 13.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u>축제영상팀장</u> 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영상산업팀장</u> -----

### 14.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현행	개정안
제62조(구성) ①~ ② (생략)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업무 관련 <u>본부장</u> 으로 한다. ④ ⑤ (생략)	제62조(구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u>국장</u> ----- ④ ⑤ (현행과 같음)

### 15.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제8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u>미래경영본부장</u> 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차종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4. (생략)	제8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경제건설국장</u> ----- ----- 1. ~ 4. (현행과 같음)

### 16.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현행	개정안
제9조(회계공무원) ①(생략) 1. 기금운용관 : <u>미래경영본부장</u> 2. ~ 3. (생략) ② (생략)	제9조(회계공무원) ①(현행과 같음) 1. 기금운용관 : <u>경제건설국장</u> 2.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②(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u>미래경영본부장</u> 이 된다. ④ ~ ⑥(생략)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u>경제건설국장</u> 이 된다. ④ ~ ⑥(현행과 같음)

### 17. 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현행	개정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생략) 1. (생략) 2.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u>본부장</u> 3. ~ 9. (생략) ② ~ ③(생략)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u>국장</u> 3. ~ 9. (현행과 같음) ② ~ ③(현행과 같음)

## 18. 제천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p>제4조(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 ① ~ ②(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본부의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고, 총괄조정관은 미래경영본부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본부의 통제관은 시소속공무원 중 자연·인적재난 또는 기반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u>본부장</u>이 되며 총괄조정관을 보좌한다.          ⑤ ~ ⑦(생략)</p>	<p>제4조(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  <u>경제건설국장</u>-----          ④ -----  ----- <u>국장</u> -----  -----  ⑤ ~ ⑦(현행과 같음)</p>

## 19. 제천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현행	개정안
<p>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생략)          ③ 위원은 사회적으로 저명한 신경이 있는 전문가나民間단체 임원급 또는 자연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하여 4~5인을 위촉하고 당연직 4~5인은 제천시 관련 실·과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④(생략)</p>	<p>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  -----  -----  --<u>담당관·과장</u>--  ④(현행과 같음)</p>

## 20. 제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현행	개정안
<p>제5조 (위원장) ①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u>본부장급</u> 공무원으로 한다.          ② ~ ③(생략)</p>	<p>제5조 (위원장) ①-----  ----- <u>국장급</u> -----  -----  ② ~ ③(현행과 같음)</p>

## 21.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현행	개정안
<p>제7조(심사위원회구성) ① ~ ②(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u>미래경영본부장</u>, 지역개발과장, 건설방재과장, 시의회 의원, 건축사, 주택관리사, 입주자대표 기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 ⑥(생략)</p>	<p>제7조(심사위원회구성)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 <u>경제건설국장</u>, -----  -----  -----  ④ ~ ⑥(현행과 같음)</p>

## 22.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p>제6조(구성) ①(생략)          1. ~ 4. (생략)          5. 부시장, <u>미래경영본부장</u>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u>미래경영본부장</u>이 된다.          ③ ~ ⑤(생략)</p>	<p>제6조(구성) ①(현행과 같음)          1. ~ 4. (생략)          5. -----, <u>경제건설국장</u>          ② ----- <u>경제건설국장</u>이 된다.          ③ ~ ⑤(현행과 같음)</p>

### 23. 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행	개정안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② (생략)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 본부장이 된다. ④ ~ ⑤ (생략)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국장이 ----- ④ ~ ⑤ (현행과 같음)

### 24. 제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행	개정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생략) ② 위원장은 미래경영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추선한다. ③ ~ ④(생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현행과 같음) ② ----- 경제건설국장 ----- ----- ③ ~ ④(현행과 같음)

### 25.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7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생략) ②(생략) 1. 제천시 부시장 및 업무관련 본부장·실·과장 2. ~ 9.(생략) ③ ~ ⑥(생략)	제7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 ----- 국장·담당관·과장 2. ~ 9.(현행과 같음) ③ ~ ⑥(현행과 같음)

### 26. 제천시 공인 조례

현행	개정안
제13조(공인관수자 및 인증계기 관리자) ①(생략) ②인증계기의 관리책임자는 보관 및 사용 실·과장, 담당관 및 직속기관장, 소장, 읍면동장으로 각각 그 직에 임명 된 자로 한다. ③ ~ ④(생략)	제13조(공인관수자 및 인증계기 관리자) ①(현행과 같음) ②----- 담당관·과장 ----- ----- ③ ~ ④(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별표 2】 (제17조 관련) <b>인증계기사용 민원사무표</b>		【별표 2】 (제17조 관련) <b>인증계기사용 민원사무표</b>	
번호	인증계기사용 민원사무명	발급기관	비고
1	지방세과세증명권	세정과	
2	지방세납세증명서, 개별주택가격확인원	세정과	
3	가족관계증명서	민원지적과, 읍, 면	
4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역개발과	
5	토지(임야)대장등본	민원지적과	
6	지적(임야)도등본	민원지적과	
7	수치지적도등본	민원지적과	
8	기타단체등록증명	민원지적과	
9	주민등록등·초본	읍·면·동	
10	인감증명	읍·면·동	
11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읍·면·동	
12	토지가격확인원	읍·면·동	
13	지방세납세환납(과세·미납)증명	읍·면·동	
14	기타 인증계기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사무	해당 실과, 사업소 읍·면·동	
번호	인증계기사용 민원사무명	발급기관	비고
1	지방세과세증명권	세정과	
2	지방세납세증명서, 개별주택가격확인원	세정과	
3	가족관계증명서	민원지적과, 읍, 면	
4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역개발과	
5	토지(임야)대장등본	민원지적과	
6	지적(임야)도등본	민원지적과	
7	수치지적도등본	민원지적과	
8	기타단체등록증명	민원지적과	
9	주민등록등·초본	읍·면·동	
10	인감증명	읍·면·동	
11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읍·면·동	
12	토지가격확인원	읍·면·동	
13	지방세납세환납(과세·미납)증명	읍·면·동	
14	기타 인증계기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사무	해당 부서 읍·면·동	

## 27. 제천시 포상 조례

현행	개정안
<p>제3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생략)</p> <p>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행정복지본부장이 된다.</p> <p>③위원은 미래경영본부장, 직속기관의 장, 한방 경제과장, 자치행정과장,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천시지부장으로 한다.</p> <p>④ ~ ⑤(생략)</p> <p>제11조(포상절차) ①각급 기관장 또는 실·과장 및 담당관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p> <p>② ~ ⑤(생략)</p>	<p>제3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현행과 같음)</p> <p>②-----</p> <p>----- 행정복지국장 -----</p> <p>③----- 경제건설국장 ----- 경제과장 -----</p> <p>-----</p> <p>④ ~ ⑤(현행과 같음)</p> <p>제11조(포상절차) ①----- 담당관·과장 -----</p> <p>-----</p> <p>-----</p> <p>-----</p> <p>② ~ ⑤(현행과 같음)</p>

## 28. 제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 ②(생략)</p> <p>③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단위를 말하며, 본부 및 실·과 및 담당관 등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p>	<p>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 ②(현행과 같음)</p> <p>③-----</p> <p>-----</p> <p>-----</p> <p>----- 국, 담당관, 과 -----</p> <p>-----</p>

## 29.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현행			개정안		
【별표 1】 읍·면·동 권한위임사항			【별표 1】 읍·면·동 권한위임사항		
실무명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부서명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자 치 행정과	1. 소내 공무원의 보직 발령	지방공무원법 제6조	자 치 행정과	1. 소내 공무원의 보직 발령	지방공무원법 제6조
사회 복지과	1. 의료급여증발급(재사용)	의료급여법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12조	사회 복지과	1. 의료급여증발급(재사용)	의료급여법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12조
	2. 의료급여대상자증명서발급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12조		2. 의료급여대상자증명서발급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12조
	3. 개장신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여 성 정체과	3. 개장신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4. 매장신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4. 매장신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5. 화장신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5. 화장신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6. 개장, 매장, 화장신고필증 교부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6. 개장, 매장, 화장신고필증 교부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7. 모·부자가정증명서의 발급	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 제9조의2		7. 모·부자가정증명서의 발급	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 제9조의2

현행			개정안		
【별표 2】 읍·면·동 온라인 민원위임사항			【별표 2】 읍·면·동 온라인 민원위임사항		
설과명	사무명	근거법령	부서명	사무명	근거법령
건축디자인과	1. 건축물관리대장 관리 및 등초본 발급, 열람	건축법 제29조 및 건축물관리대장의기재 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10조	건축디자인과	1. 건축물관리대장 관리 및 등초본 발급, 열람	건축법 제29조 및 건축물관리대장의기재 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10조

### 30. 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0조(심의회 구성) ①(생략)          ②(생략)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u>미래경영본부장</u>, 행정  <u>복지본부장</u>          2. (생략)          ③ ~ ⑤(생략)</p>	<p>제10조(심의회 구성)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u>행정복지국장</u>, 경제건  <u>설국장</u>          2. (현행과 같음)          ③ ~ ⑤(현행과 같음)</p>

### 31. 제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1.~ 2.(생략)	제2조(용어의 정의) 1.~ 2.(현행과 같음)
3.“주관부서”라 흡은 시의 단위업무를 담당하는 실·과 및 담당관을 말한다.	3.----- <u>담당관·과-----</u>
4. ~ 5.(생략)	4. ~ 5.(현행과 같음)
제10조(구성) ①(생략)	제10조(구성) ①(현행과 같음)
②위원장을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 원은 지역내 유관기관·민간단체·학계·언론계· 산 업체의 장과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교수·교사·연구원, 시 의회의원, 업무관련 실· 과장 및 담당관을 위원장이 임명·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 ④(생략)	②----- ----- ----- ----- <u>담당관·과장-----</u> ----- ③ ~ ④(현행과 같음)

### 32.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 33.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 ②(생략) ③(생략) 1. 제천시부시장, <u>미래경영본부장</u> , 행정복지본부장 2. ~ 4. (생략) ④ ~ ⑤(생략)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1. -----, <u>행정복지국장</u> , 경제건설국장 2. ~ 4. (현행과 같음) ④ ~ ⑤(현행과 같음)

## 34. 제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현행	개정안
제11조(회계공무원) ①(생략) ②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 납원은 <u>주민지원팀장</u> 으로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현행과 같음) ②----- ----- <u>복지기획팀장</u> -----.

## 35. 제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현행	개정안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u>시민복지팀장</u> 으로 한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현행과 같음) ②----- ----- <u>복지기획팀장</u> -----.

## 36. 제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①(생략)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u>사회복지과장</u> 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생략) 제7조(실무위원회의 간사) ①(생략) ②간사는 <u>여성유소년팀장</u> 으로 한다.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①(생략) ②----- <u>여성정책과장</u> ----- ----- ③(현행과 같음) 제7조(실무위원회의 간사) ①(현행과 같음) ②----- <u>아동청소년팀장</u> -----

## 37. 제천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기금관리 운용조례

현행	개정안
제10조(회계공무원) ①(생략) ②기금운용관은 <u>사회복지과장</u> 으로 하고, 기금출 납원은 <u>여성유소년팀장</u> 으로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현행과 같음) ②----- <u>여성정책과장</u> ----- ----- <u>아동청소년팀장</u> -----

## 38. 제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현행	개정안
<p>제21조(구성 및 임기) ① ~ ②(생략)</p> <p>③ 위원은 여성정책업무의 본부장, 전략기획실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과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④(생략)</p> <p>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된다.</p>	<p>제21조(구성 및 임기) ① ~ ②(현행과 같음)</p> <p>③ ----- 국장, 기획감사담당관 -----</p> <p>-----</p> <p>-----</p> <p>④(현행과 같음)</p> <p>⑤ -----</p> <p>----- 여성정책과장 -----</p>
<p>제32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여성유소년팀장으로 한다.</p> <p>②(생략)</p>	<p>제32조(회계공무원) ① -----</p> <p>----- 여성정책과장 -----</p> <p>----- 여성정책팀장 -----</p> <p>②(현행과 같음)</p>

## 39. 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현행	개정안
<p>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②(생략)</p> <p>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의회의원 3인, 행정복지본부장, 사회복지과장 등 당연직과 제천시노인회장, 읍면동 분회장 2인으로 구성한다.</p> <p>④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로재활팀장으로 한다.</p>	<p>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②(현행과 같음)</p> <p>③ -----</p> <p>----- 행정복지국장, 여성정책과장 -----</p> <p>-----</p> <p>④ ----- 경로복지팀장 -----</p>
<p>제11조(회계관리) ①(생략)</p> <p>② 기금운용관은 행정복지본부장, 기금분임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경로재활팀장으로 한다.</p>	<p>제11조(회계관리) ①(현행과 같음)</p> <p>② ----- 행정복지국장, ----- 여성정책과장, ----- 경로복지팀장 -----</p>

## 40. 제천시 장애인 극복상 조례

현행	개정안
<p>제8조(심사위원회구성 및 운영) ①~⑥(생략)</p> <p>⑥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서기는 경로재활팀장이 된다.</p>	<p>제8조(심사위원회구성 및 운영) ①~⑤(현행과 같음)</p> <p>⑥ -----</p> <p>-----</p> <p>----- 장애인복지팀장 -----</p>

## 41.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현행	개정안
<p>제7조(회계관계 공무원) ①(생략)</p> <p>② 기금운용관은 재활복지팀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자로 한다.</p> <p>③(생략)</p>	<p>제7조(회계관계 공무원) ①(현행과 같음)</p> <p>② ----- 장애인복지팀장 -----</p> <p>-----</p> <p>③(현행과 같음)</p>

## 42. 제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행	개정안
<p>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 ②(생략)          ③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보건위생과장          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u>의약위생팀장을</u> 기금출          납공무원으로 한다.          ④~⑤(생략)</p>	<p>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 <u>위생관리팀장</u>-----          ④~⑤(현행과 같음)</p>

## 43. 제천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3조(회계관리) ①(생략)          ②기금운용관은 기술자원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          원은 <u>지도인력팀장</u>으로 한다.          ③~④(생략)</p>	<p>제13조(회계관리) ①(현행과 같음)          ②-----          ----- <u>지도행정팀장</u>-----          ③~④(현행과 같음)</p>

## 44. 제천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현행	개정안
<p>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생략)          ②관리자는 상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u>본부장</u>으로          한다.</p>	<p>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현행과 같음)          ②-----          ----- <u>국장</u>-----</p>

## 45.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현행	개정안
<p>제4조 (입장료징수등) ①<u>관광시설관리소장</u>은 입장          객으로부터 별표 1의 입장료를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판매 징수한다.          ②(생략)</p>	<p>제4조 (입장료징수등) ①<u>문화관광과장</u>-----          -----          ②(현행과 같음)</p>
<p>제5조 (요금표개시) 관광시설관리소장은 대중이 잘          볼수 있는 곳에 별지 제1호서식의 요금표를 개          시한다.</p>	<p>제5조 (요금표개시) <u>문화관광과장</u>-----          -----          -----</p>

## 관련법령

### □ 지방자치법

-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13조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

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 행정절차법

제41조 (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1.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삭제 <2002.12.30>

③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④ 입법예고의 기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 (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이상으로 한다.

#### □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 (법령안 입법예고) ①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에 관하여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며, 부처에 소속된 기관의 장은 그 소속 부처의 장의 승인을 얻어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법령안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제출의견의 처리) ①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법령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이유등을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천시 공고 제 2010 - 1116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0. 11

## 제 천 시 장

##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 조 래 명 :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2. 개정이유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행사종료에 따른 엑스포 실행기구의 해체와 민선5대 핵심전략 사업인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 및 기업 유치, 시민복지 증진, 여성권익 신장 등 전략사업 집중을 위한 직제로 재편하고자 조직의 비효율적인 유사·중복 기능의 통·폐합과 기능의 이관으로 '꼭 필요 한 기능' 을 확대하여 '일 더 잘하는' 조직으로 리모델링 하고자 함

## 3. 주요개정안

## [기구개편안]

구 분	개편전	개 편 (안)	증 감	비 고
본 청	2본부, 1실1담당관17과	2국, 1담당관, 1단, 18과	증 1과	
직속기관	2기관 4과	2기관 4과	-	
사 업 소	4사업소	3사업소	△1사업소	
읍 면 동	1읍, 7면, 9동	1읍, 7면, 9동	-	
의 회	1국 2담당	1국 2팀	팀명변경	

### [조례개정안]

- 사무분장을 위한 국의설치, 국의 건제순 (안 제4조 관련)
- 국간 행정기구 이관 업무효율성 확대 (안 제4조, 제5조 관련)
- 행정복지국의 직제명 및 국에 두는과와 개략사무 (안 제5조 관련)
- 경제건설국의 직제명 및 국에 두는과와 개략사무(안 제6조 관련)
- 사업소설치, 개략사무 (안 제13조 내지 제15조 관련)

### ※ 개정요지

- 국의설치 : 행정복지국, 경제건설국 (국의명칭, 국간 건제순 변경)
- 기구신설 : 미래창조기획단, 여성정책과, 투자지원과
- 기구폐지 : 투자유치담당관, 엑스포지원단, 관광시설관리소

###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안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10월 31일까지 제천시장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801, FAX 641 - 5469 담당자 : 염세진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주무관	인사팀장	자치행정과장			

### 조직개편 관련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결과보고

민선5기 조직개편을 위한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과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중 제출의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공고번호	조례명	예고기간	공고매체	총 회자수	의전제시(건)	비고
2010-1115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10.10.11 ~ ‘10.10.31(20일)	제천시보 및 시 홈페이지	260	없음	
2010-1116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10.10.11 ~ ‘10.10.31(20일)	제천시보 및 시 홈페이지	322	1건	•정책 담당관 •경제과 •한방바이오과

붙임 :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 제출의견 검토결과(별지) 1부